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66호

**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80-281호(1980.8.4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-1호(1981.5.20.)로 지적 승인된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자동차정류장)을 결정(폐지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26일  
서울특별시장

1. 도시계획시설 결정(폐지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(폐지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①	자동차정류장	여객자동차터미널	둔촌동 77번지 일대	1,502	감)1,502	-	1980. 8. 4. (서고1980-281호)	-

※ 공공기여 : 문화체육센터 설치(「도시계획시설 폐지·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안 개선」에 따라 해제 면적의 5%이상 공공기여 비율 준용)  
 ※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폐지조건 : 공공기여(기부채납) 문화체육센터 289.9㎡(지상1층)

나. 결정(폐지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결정 내용	결정 사유
①	자동차정류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폐지</li> <li>- 면적 : 1,502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년 이상 버스차고지 용도로 미사용 되었으며, 현재 내대지 상태로 대상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폐지</li> </ul>

2.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

구분	완화내용	비고
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평균층수 완화(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)</li> <li>-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내 평균층수 13층 이하 적용</li> </ul>	-

※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상지 내 어린이놀이터(192.52㎡) 및 공개공지(119.98㎡) 조성  
 ※ 주변시설(둔촌어린이집)과의 연결통로(출입구)조성을 통한 연결성 강화

3. 지형도면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4.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시설계획과(☎02-2133-8423), 강동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425-6024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[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(폐지) 지형도면 고시 ]

○ 기 정



○ 변경

